

WTO 발리 각료회의(MC9)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서진교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선임연구위원(jksuh@kiep.go.kr, Tel: 3460-1156)

서정민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팀장(jmsuh@kiep.go.kr, Tel: 3460-1186)

오수현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부연구위원(shoh@kiep.go.kr, Tel: 3460-1150)

박지현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전문연구위원(jhpark@kiep.go.kr, Tel: 3460-1136)

김민성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전문연구위원(mskim411@kiep.go.kr, Tel: 3460-1113)

차 례 ●●●

1. 발리 각료회의 준비와 논의 경과
2. 발리 패키지의 주요 내용과 의미
3. 발리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
4. 발리 각료회의 평가 및 정책 시사점

주요 내용 ●●●

- ▶ 2013년 12월 3~7일간 발리에서 개최된 WTO 제9차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 농업 일부 의제, 개발 및 최빈 개도국 등에 대한 발리패키지 협상이 최종 타결되어 각료선언 및 결정문이 채택됨.
- ▶ 무역원활화 분야는 선진국이 의무규정인 section I에서의 의무화 수준을 일부 완화하고, 개도국 우대를 다루는 section II에서는 대개도국 우대 확대를 수용함으로써 부분적인 잠정 타협안을 도출한 후, 발리 각료회의에서 다시 개도국의 요구와 선진국의 입장을 조정하여 최종합의에 도달하였음.
- ▶ 농업 TRQ 관리개선의 경우 2019년 제12차 각료회의까지 기존에 G20이 제안한 TRQ 관리방안을 그대로 적용 하되, 미소진 메커니즘 및 개도국 우대규정은 제12차 각료회의에서 연장 또는 수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
 -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보조의 허용화 부문에서는 항구적 해결방안이 합의되어 마련될 때까지 평화조항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합의
 - 수출경쟁 부문은 현 수준의 수출보조 감축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의 합의
- ▶ 무관세무쿼터 의무수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가능한 최대의 시장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현존의 특혜관세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표현으로 합의
 - 최빈개도국에 대한 서비스 의무면제는 향후 서비스이사회를 통해 최빈개도국에 상업적으로 의미있는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
- ▶ 발리패키지 무역원활화 이행에 따른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1.5~3.9% 증가, 수출은 4.3~7.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 발리 각료회의는 교착상태에 있던 DDA 협상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아 다자통상체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구체적인 협상재개의 모멘텀을 제공함.
 - 이번 발리패키지 합의내용은 농업 및 개발 분야에서 우리 경제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은 한편, 무역원활화를 통한 전반적 수출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할 수 있음.

1. 발리 각료회의 준비와 논의 경과

가. 발리 각료회의 준비: 발리 패키지(안)의 마련

■ DDA 협상은 2012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그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였음.

- 2008년 7월 제네바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잠정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이후 두 차례 걸친 ‘형식적 각료회의 개최 (2009년 12월과 2011년 12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각료회의를 의미)¹⁾와 이후 2012년 말 미국의 대통령선거 및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출범 등 주요국들의 국내 정치일정으로 DDA 협상은 소위 개점휴업 상태였음.
- 이러한 부진 속에서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로지역 재정위기 발생으로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지자 주요국들은 자국의 경기회복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둔 나머지 DDA 협상에 관한 관심이 떨어졌으며, 자연히 협상타결 전망도 상당히 비관적이었음.²⁾

■ 이러한 흐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13년 1월의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으로, 이 포럼에 참석한 WTO 주요국들은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를 통해 경기회복을 추구하는 한편 DDA 협상의 파국이 몰고 올 국제무역질서의 불확실성 증대를 우려하여 DDA 협상이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음.

- 이러한 움직임은 2013년 12월로 예정된 제9차 WTO 발리 각료회의가(설령 부분적일지라도) 일정한 성과도출에 실패한 채 종료된다면 WTO 중심의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는 물론 DDA 협상 역시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파국에 빠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에 대해 WTO 회원국들 사이에서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임.

■ 세계경제포럼에서 주요국들의 합의는 이후 발리 각료회의에서 실현 가능한 성과도출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으며, 결국 지금까지의 협상에서 ‘조기수확(early harvest)’ 의제로 거론되었던 ①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② 농업 일부와 ③ 개발 및 최빈개도국 이슈를 ‘발리 패키지(안)’ 로 설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음.

-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TF)는 2009년 12월 통합협정문(안) 배포 이후 최근까지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분야로, 이미 지난 8차 각료회의 때부터 조기수확이 가능한 대표적 의제로 거론되어 왔음.
- 농업분야에서는 관세감축이나 민감(특별)품목, 개도국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SSM)과 같은 기존의 핵심 쟁점은 제외하고 TRQ(Tariff Rate Quota) 관리개선이 대표의제로 부상했으며, 인도가 제안한 개도국의 식량

1) 2009년 12월과 2011년 12월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두 차례의 각료회의는 DDA 이슈를 논의하기보다 형식적, 행정적인 측면에서 개최된 각료회의로 평가할 수 있음. 특히 2011년 12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8차 각료회의(MC8)는 조기수확 의제의 선정조차 실패한 채 일부 신규국가의 WTO 가입과 정부조달협상 타결 등의 비DDA 이슈로 진행되었음.

2) DDA 협상이 결국엔 파국을 맞고 다시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개편 논의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했으며, 이러한 DDA 협상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현재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님.

안보를 위한 공공비축보조의 허용화 문제와 농산물 수출보조철폐 등이 추가 의제로 논의되었음.

- TRQ 관리개선은 UR 농업협상 결과에 따라 설정된 농산물 쿼터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입관세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입이 해당 쿼터를 채우지 못하는 소위 'TRQ 미소진(underfil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20이 제안한 의제임.
- 개도국의 식량안보용 공공비축보조의 허용화는 G33을 대표하여 인도가 제안한 의제로, 2008년 이후 빈발하는 곡물가격의 폭등락 현상과 관련하여 개도국의 빈곤계층에 대한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정책은 감축보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임.³⁾
- 농산물 수출경쟁은 2005년 홍콩 각료회의의 합의사항으로, 2013년 철폐시한을 맞아 농산물수출 개도국을 중심으로 발리 각료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의제로 제기되었음.
- 한편 개발 및 최빈개도국(LDCs)과 관련하여서는 홍콩 각료회의 합의사항인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터(Duty-Free Quota-Free: DFQF)가 주요 의제로 선정되었으며, 이와 함께 면화 보조금감축과 서비스 분야에서의 의무면제, 원산지규정에서의 최빈개도국 우대 등이 의제로 선정되었음.
- 이에 따라 발리 패키지는 잠정적으로 i) 무역원활화, ii) 농업분야 일부 이슈, iii) 개발 및 최빈개도국의 3대 의제로 구성되어 2013년 9월부터 집중적인 논의가 전개되었음.

나. 발리 각료회의 논의 경과

1) 제네바에서의 집중 협상

- 파스칼 라미에 이어 신임 WTO 사무총장으로 선임된 아제베도(Azevedo) 총장은 발리 각료회의의 성공적 패키지 도출을 위해서 제네바에서 집중적인 협상을 강조하였음.
- 아제베도 신임 WTO 사무총장은 발리 각료회의에서 각료들에 의한 타협안 도출이 어렵다고 보고, 제네바에서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회원국간 이견을 최대한 좁혀 잠정 타협안을 만든 다음 이를 발리 각료회의에 상정해 각료들에 의한 합의를 종용해야 발리 각료회의가 성공적으로 패키지를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이에 따라 아제베도 총장은 2013년 9월부터 주요 회원국간 집중적인 이견절충을 종용해 왔음.
- 그 결과 발리 패키지 3대 의제 가운데 무역원활화를 제외한 농업 일부와 개발 및 최빈개도국의 경우 잠정 합의안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아제베도 총장은 각료회의 직전 마지막으로 개최되었던 일반이사회에서 이를 보고하였음.
- 무역원활화의 경우 아제베도 총장의 집중적인 중재노력으로 당초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section II(개도국에 대한 지원)에서 오히려 극적인 합의를 도출해냈으나, 의무화 수준을 규정한 section I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무역원활화 전체의 잠정 타협안 도출은 실패했음을 언급

3) 현행 WTO 농업협정문에 따르면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은 시가에 구매 및 방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생산유인효과 때문에 대표적인 감축대상보조로 분류되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말까지 발리 각료회의에 대한 전망은 실패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이는 발리 패키지 안에서 무역원활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두 의제보다 훨씬 큰 데 비해 관련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아 짧은 각료회의를 통하여 무역원활화 합의도출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음.
- 미국 등 선진국은 무역원활화가 빠진 발리 패키지는 생각할 수도 없다고 언급하면서 발리 패키지 도출에 있어서 무역원활화의 타결이 선결조건임을 강조
- 이러한 가운데 EU와 쿠바, 터키 등이 무역원활화 section I에서 통과와 관련하여 새로운 요구를 제시함에 따라 합의도출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었음.
- 여기에 인도가 국내 정치적 사정을 들어 농업부문에서 어렵게 합의에 도달한 제네바 잠정 타협안을 반복하자 발리 각료회의 전망은 더욱 비관적이었음.
- 특히 아제베도 사무총장이 발리 각료회의에서 협상은 없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발리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 및 농업에서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음.
- 이에 따라 발리 각료회의는 무역원활화의 section I과 인도가 반대하고 있는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보조 허용화에서 과연 어떠한 타협안이 나올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졌음.

2) 발리 각료회의에서의 타협

- 발리 각료회의 개막 직후 농업분야 쟁점이 협상타결의 관건으로 다시 부상하였음.
- 농산물 수출경쟁 잠정 합의안 도출 당시부터 이에 반대해 왔던 아르헨티나가 G20 각료회의에서 남미의 몇몇 회원국들과 함께 잠정 합의안 반대를 재확인
 -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및 아르헨티나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
- 인도도 어렵게 타협한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에 적용될 평화조항은 항구적 해결방안이 나올 때까지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 아울러 인도는 무역원활화 논의에서도 선진국에게 강력히 반발
 - 농업분야에서 잠정 타협안에 대한 입장 반복으로 발리 패키지 도출 실패의 책임을 우려한 인도는 무역원활화 section I에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일부 개도국들과 연합하여 전략적으로 무역원활화 section I 분야에서 강한 반대입장을 견지
 - 이는 농업뿐 아니라 무역원활화에서도 이견이 많아 발리 패키지 합의도출이 어렵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협상결렬의 책임소재와 관련된 인도의 전략적 행동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협상 종료 마지막 순간에 아제베도 사무총장과 인도네시아의 중재안에 대해 미국과 인도가 타협함으로써 극적으로 발리 패키지가 합의도출되었음.

- 미국은 농업분야에서 인도의 요구를 수용한 한편, 인도도 무역원활화에서 기존의 강력한 반대입장을 철회하여 무역원활화와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의 허용화에서 동시에 타협안이 만들어졌음.
- o 식량안보용 공공비축보조에서 사실상 항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평화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음.
- o 미국도 식량안보용 공공비축보조의 남용을 방지할 제한을 마련하는 한편 미국이 관심을 보였던 특송화물에서 신속한 반출을 위한 절차도입을 의무화하여 무역원활화에서 일정 부분 미국의 입장을 관철시켰음.

2. 발리 패키지의 주요 내용과 의미

- 발리 패키지는 무역원활화와 농업 일부, 개발 및 최빈개도국 등 3개 의제에 대해 총 10개의 각료 결정 및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음.⁴⁾

가. 무역원활화

- 무역원활화는 일반적으로 통관절차의 간소화, 표준화 및 조화, 현대화를 의미하는데, 넓은 의미로는 이와 같은 국경조치뿐만 아니라 국가의 인프라 수준, 기업환경, 투명성, 규제정책 등의 국내 조치도 포괄함.
- 싱가포르 이슈 가운데 유일하게 DDA 협상의 정식의제로 채택되어 2005년부터 협상이 본격화되었으며, 2009년에는 통합협정문이 작성·배포되어 이후 통합협정문의 문안조정을 중심으로 협상이 전개되어 왔음.
- 무역원활화 통합협정문은 section I(의무규정)과 section II(개도국 우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협상은 도출된 협정문안에 기초하여 회원국간 이견을 보이는 조문을 중심으로 타협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
 - section I은 GATT 5조(통과의 자유), 8조(수출입 절차 및 수수료), 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를 명확히 하고, 필요시 이를 개선하는 내용과 세관협력으로 주로 무역원활화를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section II는 section I의 의무이행과 관련된 개도국 지원조항으로 A, B, C 3개의 의무로 구분되는데, A 의무는 협정발효 즉시 이행하는 의무이며, B 의무는 협정발효 이후 일정기간 경과 후 이행하는 의무, C 의무는 협정 발효 이후 일정기간 경과 및 능력배양을 위한 선진국의 지원을 조건으로 이행하는 의무를 말함.
- 무역원활화 협상은 section I에서 최대한 높은 수준의 의무를 부과해 통관을 원활히 하려는 선진국과 의무화 부담은 낮추고 대신 section II에서 이행을 위한 선진국의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개도국이 대립하면서 협상이 전개되어 왔음.

4) ① 무역원활화, ② TRQ 관리개선, ③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④ 일반 서비스, ⑤ 수출경쟁, ⑥ 모니터링 메커니즘, ⑦ 무관세-무쿼터, ⑧ 서비스 웨이버 실행방안, ⑨ 특혜원산지 지침, ⑩ 면화

- 무역원활화 의무조항인 section I에서 개도국들은 인적·물적 자원의 제약을 이유로 법적구속력이 없는 ‘노력한다(endeavor)’라는 문구를 주장해온 반면, 선진국들은 section II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법적구속력이 있는 ‘의무화(shall)’ 문구를 주장해왔음.
- 개도국 우대조항인 section II에서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기술 및 재정지원 담보를 주장해온 반면, 선진국들은 개도국이 선진국의 지원부족을 이유로 의무의행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세로 일관해왔음.

■ 2013년 9월 이후 아제베도 사무총장 주도의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선진국이 section I의 의무화 수준을 일부 완화하고, section II는 대개도국 우대확대를 수용함으로써 부분적인 잠정 타협안을 도출한 후, 발리 각료회의에서 다시 개도국의 요구와 선진국의 입장을 조정하여 최종합의에 도달

- Section I 중 이행에 따른 비용이 높고 지원이 필요한 대표적인 분야와 기술적인 사안 외에 정치적으로 민감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의무화 수준에 있어 협상 막판까지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첨예하게 대립했던 조항의 협상 결과는 [표 1]과 같음.
- 이행비용이 높고 기술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 조항별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어 타협안을 도출함.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물품의 신속한 반출을 위한 도착 전 처리절차, 통관 후 심사절차의 도입 및 유지는 의무화하여 합의됨.
 - 반면 전자납부, 위험관리, 통과 교통을 위한 별도의 인프라 구축 등은 개도국의 의견을 수용하여 완화된 의무화 수준으로 합의
 - (단일서류 접수창구) 우리나라가 제안한 단일서류 접수창구(싱글윈도우)의 경우 제도 자체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WTO 회원국 모두 공감하였으나, 조치이행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높은 의무화 수준에 반대하여 노력 조항으로 합의
 - (사전심사) 회원국간에 공통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수입물품의 품목 분류,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는 의무화되었으나 관세 평가, 관세 면제, 쿼터 등의 여타 범위에 대해서는 권고수준으로 합의
 - (특송화물) 미국의 관심 분야인 항공화물 시설을 통해 반입된 화물의 신속한 반출을 위한 절차의 도입 또는 유지는 의무화되었으나, 무게나 금액에 관계없이 특송화물을 적용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되고, 관세 및 세금이 면제되는 최소허용 조항은 의무화 수준이 완화되어 합의
 - (인가된 무역업자) 인가된 무역업자에 대해 수출입, 통과 관련 추가적인 무역원활화 조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나,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7개의 조치 중 최소 3개 이상의 조치만 포함하도록 하여 신축성을 부여
- 협상범위 초과, 자국법과의 상충문제, 주권침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선진국이 개도국의 의견을 수용하여 조항이 삭제되거나 의무화 수준이 완화되어 합의
 - (영사공증제도) 선진국은 영사공증제도가 무역업자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과 시간 소요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으나, 개도국의 반대로 인해 조항 자체를 삭제
 - (선적 전 검사) 품목 분류, 관세 평가와 관련된 선적 전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 것을 의무화하고, 회원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타 분야의 선적 전 검사와 관련된 새로운 조치를 도입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는 수준에서 합의
 - (세관중개인 사용) 현재 세관중개인의 특별한 역할을 유지하고 있는 일부 회원국들의 중요한 정책적 우려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효 이후 시점부터 세관중개인의 의무적인 사용에 관한 요건을 도입하지 않는 것을 의무화하는 선에서 합의

표 1. 무역원활화 협정문(안) 주요 내용과 최종합의 수준

조항	주요 내용	합의 수준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1.2항)	수출입 절차, 관련 법령 등 통상 관련 정보(1.1항에 명시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	의무화
질의처의 설립(1.3항)	1.1항에 명시된 정보에 대한 정부, 여타 이해관계자의 질의에 응답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질의처를 설립	의무화수준 완화
사전심사(3항)	수입 전에 신청자에게 수입물품의 품목 분류, 원산지에 대해 심사하여 서면통보	의무화 단 의무화 범위 대상 축소
불복절차(4항)	행정 결정에 대해 행정적, 사법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권리 제공	의무화
페널티 조항(6.3항)	상황에 대한 고려와 위반 정도 및 경중에 비례하여 페널티를 부과	의무화
도착 전 처리(7.1항)	도착 시 물품의 신속한 반출을 위해 도착 전 처리절차의 도입 또는 유지	의무화
전자납부(7.2항)	관세, 세금, 요금치 수수료 등에 대한 전자납부절차 도입 또는 유지	의무화수준 완화
위험관리(7.4조)	위험관리 시스템의 도입 및 유지	의무화수준 완화
통관 후 심사(7.5항)	통관 및 관련 법률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통관 후 심사의 도입 및 유지	의무화
인가된 무역업자(7.7항)	인가된 무역업자에 대해 수출입, 통과 관련 추가적인 무역원활화 조치를 제공	의무화 단 추가적인 무역원활화 제공범위 축소
특송화물(7.8항)	항공화물 시설을 통해 반입된 화물의 신속한 반출을 위한 절차의 도입 또는 유지	의무화 단 신속한 특송화물의 반출을 위해 회원국이 제공해야 하는 조치의 범위가 일부 삭제되거나 완화
복사본의 수용(10.2항)	수출입, 통과 관련절차에 요구되는 관련서류의 복사본 수용	의무화수준 완화
싱글윈도우(10.4항)	싱글윈도우 시스템의 도입 및 유지	의무화수준 완화
선적 전 검사(10.5항)	품목 분류, 관세 평가와 관련된 선적 전 검사요구를 금지	의무화 단 적용범위를 제한
세관중개인의 사용(10.6항)	발효 이후부터 세관중개인 사용의 의무화 금지	의무화 단 회원국의 정책적 우려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
통과의 자유(11.5조)	통과 교동을 위한 별도의 인프라 구축	의무화수준 완화

자료: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Draft ministerial decision(WT/MIN(13)W/8)을 기초하여 작성.

나. 농업분야 일부 의제

- 농업분야 일부 의제는 i) 농업 TRQ 관리 개선, ii) 개도국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보조 허용화, iii) 농산물 수출경쟁 등 3개의 세부 의제로 구성되어 있음.

1) 농업 TRQ 관리 개선

- G20⁵⁾이 UR 농업협정에 따라 낮은(또는 무세) 관세가 적용되는 쿼터(TRQ)의 실제 소진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농업협상 4차 의장수정안의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제안
 - 핵심내용은 TRQ 관리에 대해 WTO상의 수입허가 절차협정을 준용하고 미소진 메커니즘을 도입
 - 미소진 메커니즘에 따르면 TRQ 소진율이 3년 연속 65% 미만이거나 또는 TRQ 소진율 미통보 시 현행 TRQ 관리 방식을 시장지향적인 선착순 또는 비조건부 허가방식⁶⁾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음(단 개도국은 변경의무 면제).
- 당초 대부분의 회원국이 G20 제안에 찬성하여 큰 무리없이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막판에 개도국 우대조항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
 - 미국은 개도국 우대에는 동의하지만 현재와 같이 개도국에게 의무를 완전히 면제해주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개도국 우대는 필수조치로서 현재의 문구에서 변경은 절대불가하다고 강력히 반발(중국은 WTO 가입 당시 TRQ 부담이 과도하여 미소진 메커니즘 이행이 불가하다는 입장).
- 사무총장의 중재하에 미국이 수정제안을 통해 중국과 타협에 성공함으로써 타협안 도출
 - 2019년 제12차 각료회의의 시까지(6년간) 기존에 G20이 제안한 TRQ 관리방안을 그대로 적용하되, 미소진 메커니즘 및 개도국 우대규정은 제12차 각료회의에서 연장 또는 수정여부를 결정하고, 만일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속서 B에 등재된 국가를 제외하고 원래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의됨.
 - 이때 부속서 B 등재국⁷⁾에는 이 미소진 메커니즘 적용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됨.

2)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보조의 허용화

- G33을 대표하여 인도가 개도국의 자원빈곤(resource poor) 또는 저소득 농업생산자의 식량안보를 위하여 정부가 (높은) 특정 가격에 이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매·보관하는 경우, 이 보조정책은 감축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제안
 - 아울러 개도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농업, 농지, 제도개혁, 식량안보와 생계보장, 농촌개발 관련 기타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를 기존 농업협정상의 허용보조인 일반 서비스 항목에 추가하자고 제안

5)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인도,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으로 구성된 농산물 수출개도국 그룹으로, 주로 선진국의 농업보조 및 관세 철폐(내지 대폭 감소)를 주장하고 있음.

6) 비조건부 허가방식(automatic, unconditional license-on demand system)이란 허가(license)를 유지하되 허가권 발급에 어떠한 조건이나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선착순과 유사한 효과

7) 현재 부속서 B에 등재된 국가는 미국을 비롯하여 바베이도스,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파테말라 등임.

■ 당초 선진국의 반대로 논의가 부진하였으나, 잠정적인 해결방안(interim solution)으로 평화조항 또는 적절한 자제(due restraint)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

- 개도국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정책에 따라 저소득 자원부족 생산지로부터 주식 농산물을 보조가격으로 구매할 경우 감축보조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이에 대한 분쟁해결 제소를 자제
- 단 다음과 같은 제약과 추가 작업계획이 존재
 - 세이프가드: 비축 물량의 무역왜곡 방지를 보장(비축 물량의 수출금지를 포함해서 국내시장 방출을 통해 무역을 왜곡시키는 경우 WTO상 보조금협정의 적용을 받음)
 - 적용기간: 제11차 각료회의까지 적용(4년)하고, 위 각료회의에서의 작업계획을 바탕으로 후속조치를 결정
 - 통보 및 투명성: 현행 농업협정상 국내보조 통보의무를 준수하고 해당 공공비축정책에 대한 정보 및 통계 제공
 - 작업계획: 영구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계획을 늦어도 11차 각료회의 시까지 만들어 종결

■ 잠정 합의안에 수용의사를 밝혔던 인도가 국내 정치적 어려움을 들어 수용의사를 번복함으로써, 이후 발리 각료회의에서 패키지 도출의 최대 난제로 부상

- 인도는 국내 정치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영구적 해결방안이 나올 때까지 평화조항이 계속 적용되어야 하며, 아울러 WTO 보조금규정에 의한 분쟁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

■ 결국 미국과의 최종 타협을 통해 도출된 합의내용은

- 항구적 해결방안이 합의되어 마련될 때까지 평화조항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음.
- 단 수매물량의 방출이 다른 회원국의 식량안보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가 추가되었음.
- 이로써 여전히 WTO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음.

3) 농산물 수출경쟁

■ 홍콩 WTO 각료회의에서 농산물 수출보조를 2013년까지 철폐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G20이 수출경쟁분야의 일부 내용을⁸⁾ 조기수확으로 제안

- 수출보조감축으로 선진국은 2013년까지 50% 감축(개도국은 2016년까지 25% 감축)
- 수출신용의 최대상환기간을 선진국은 2013년 말부터 시작하여 540일 이내(개도국은 3년간 단계적으로 조정⁹⁾)

■ 미국과 EU 등이 홍콩 각료회의의 합의는 전체 DDA 협상 타결 및 이행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바, 농산물

8) 수출경쟁은 수출보조, 수출신용, 수출국영기업, 식량구호 등이나 위 제안은 수출보조 및 수출신용만을 포함.

9) 이행 첫날에는 1,080일, 2년 차에는 900일, 3년 차에는 540일.

수출경쟁만 뽑아서 조기수확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여 결국 법적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메시지를 만들기로 합의

- 홍콩 각료선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현 수준의 수출보조 감축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법적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과 함께, 발리 각료회의 이후 농업위원회가 매년 회원국 수출경쟁조치를 점검하기로 함. 이를 위해 수출보조 이외 수출신용, 수출국영무역, 식량원조 관련 질의양식에 합의

다. 개발 및 최빈개도국 관련 의제

- 개발 및 최빈개도국 분야 의제는 크게 i) 최빈개도국 우대 패키지, ii) 모니터링 메커니즘으로 구분

1) 최빈개도국 우대 패키지

- 2013년 5월 최빈개도국들이 대선진국 시장접근 지원을 위한 4대 우대방안(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서비스 의무면제 부여, 투명하고 단순한 특혜원산지 규정, 면화 시장접근 및 보조금 감축)을 제시

- 이후 미국이 논의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터를 빼고 대체로 쉽게 합의에 도달하였음.

-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터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다음 각료회의 이전까지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으나, 의무 수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가능한 최대의 시장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현존 특혜관세제도의 개선을 추구한다는 표현으로 합의

- 선진국 중 아직 최빈개도국에 최소 97% 이상의 무관세-무쿼터를 제공하지 않은 국가(미국)는 의무적으로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해야 함.
- 이에 따라 미국은 향후 2년 이내 최빈개도국에 대한 비차별적 무관세-무쿼터를 제공해야 함(현재는 최빈개도국을 차별하여 무관세-무쿼터를 제공).

- 최빈개도국에 대한 서비스 의무면제는 향후 서비스 이사회를 통해 최빈개도국에 상업적으로 의미있는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

- 최빈개도국의 서비스에 대해 특별한 대우를 제공할 경우 해당 회원국의 MFN 의무를 면제
- 최빈개도국이 수출관심분야에서 단일의 요청사항을 제출하면 6개월 이후 고위급회의를 개최하여 요청사항을 검토하기로 합의

- 특혜원산지 규정의 경우 최빈개도국을 위해 단순하고 완화된 '다자 가이드라인' 을 마련

- 당초 개도국이 제안한 특혜원산지 규정을 '가이드라인'으로 바꾸어 합의
 - o 이 가이드라인은 단일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는 회원국별로 신축성을 인정
 - o 부가가치 기준의 경우 공제법을 사용하여 25% 기준을 적용하기로 함(그러나 의무조항이 아닌 비구속적 가이드라인임).

2) 모니터링 메커니즘 도입

- WTO의 개도국 우대규정의 운용실태를 검토하여 추후 개도국 우대조항의 기능을 개선하기로 합의
- WTO 협정 및 각료·일반이사회 결정 등에 포함된 모든 개도국 우대규정의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필요시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는 모니터링 메커니즘(MM: Monitoring Mechanism)을 설치·운영하기로 합의

라. 면화 보조금 감축

- 홍콩 WTO 각료회의에서 면화에 약속이행을 이미 합의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면화에 대한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금을 2006년까지 철폐하고, DDA 협상 결과의 이행과 동시에 최빈개도국의 면화수출에 대해 무관세-무쿼터를 실시
 - 면화에 대한 국내보조금은 일반 농업보조금보다 큰 폭으로 감축
- 그러나 미국이 면화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행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사무총장의 주도로 정치적 선언 수준의 발리 타협안을 도출
 - 농업위원회 산하 면화위원회에서 연간 두 차례 면화무역에 대한 이슈를 논의
 - WTO 사무총장 주관으로 면화 분야의 협의 메커니즘을 추진하고, 면화 개발 및 교역관련 동향을 정기적으로 보고

3. 발리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

가. 분석 방법과 시나리오

- (무역원활화) ① DDA 무역원활화 통합협정문을 반영한 OECD 무역원활화 지수를 이용하여 ② 주요국의 산업별 무역원활화 관세상당치를 추정한 후, ③ 이를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에서 관세상당 감축률로 사용

- (농업 TRQ) ① TRQ 관리방식이 선착순으로 변경될 경우 예상되는 TRQ 소진을 증감효과를 추정하고, ② 소진을 증감과 관세감축 간 관계를 고려하여 해당 국가의 해당 산업부문에 한해 관세를 감축
- (농업 수출보조) 발리 패키지에서 감축 의무사항은 아니나 G20의 제안을 고려하여, 해당 선진국의 해당 산업부문에 한해 수출보조를 철폐
- (개발 및 최빈개도국)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는 선진국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홍콩 각료회의의 결정을 고려하여, 선진국에 한해 최빈개도국 수출품 관세를 97% 감축

표 2. 발리 패키지를 반영한 시장개방 시나리오

분야		대상국	감축률
무역원활화		전체	무역원활화 해당 산업의 관세상당치를 10% 감축
농업 일부	TRQ 관리 개선	선진국과 한국 및 중국	곡물, 과일/채소(유지작물), 설탕, 축산, 낙농 등 5개 부문의 관세를 20% 감축
	수출보조 철폐	기타 선진국 그룹	곡물, 과일/채소(유지작물), 기타농산물, 축산물, 낙농 등 5개 부문의 수출보조금/수출관세를 철폐
개발 및 최빈개도국(무관세-무쿼터)		선진국	최빈개도국 수출품에 부과되는 수입관세를 97% 감축

나. 분석 결과

- 발리 패키지 무역원활화 이행에 따라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1.5~3.9% 증가하고 수출은 4.3~7.4% 증가하여, 경제주체(정부 포함)는 발리 패키지가 없었을 경우에 비해 136~358억 달러 추가소비의 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¹⁰⁾

※ 추가소비 여유란 발리 패키지 이행 이전에 정부 및 기업, 가계 등이 소비하던 전체 상품을 발리 패키지 이 후에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사용한다고 했을 때 남게 되는 금액을 의미

10) 본 연구에서는 실제 발리 패키지 합의내용을 기준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아진 의무화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임. 발리 패키지 합의문 도출 이전의 연구(KIEP 2011)에서는 무역원활화가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한 후 임의의 무역비용 절감 시나리오(최소 2%, 최대 10% 절감)에 따라 경제적 효과를 예측한 바 있음. 이번 발리 패키지에서는 합의도출 과정에서 개도국들의 의무화수준 완화 요구가 부분적으로 반영되었고, 아울러 장기적으로만 개선이 가능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 발리 패키지 도출 이전에 예상되었던 무역원활화 개선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표 3. 발리 패키지 무역원활화 거시경제 효과

		정태모형	자본축적모형
실질 GDP 변화	증감률(%)	1.5%	3.9%
	금액(억 달러)	166억 달러	430억 달러
후생 변화(억 달러)		136억 달러	358억 달러
수출 증감률(%)		4.3%	7.4%

주: 단 여기서의 금액은 2008년 기준 금액임.

- 무역원활화 이외 농업과 개발 및 최빈개도국 합의사항의 이행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실질 GDP는 약 0.03~0.06% 증가하고, 수출은 0.06~0.10% 증가
- 경제주체(정부 포함)는 발리 패키지가 없었을 경우에 비해 약 2~5억 달러의 추가소비 여유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 발리 패키지 농업 및 개발분야 거시경제 효과

		정태모형	자본축적모형
실질 GDP 변화	증감률(%)	0.03%	0.06%
	금액(억 달러)	3.1억 달러	6.4억 달러
후생 변화(억 달러)		2.3억 달러	4.5억 달러
수출 증감률(%)		0.06%	0.1%

주: 단 여기서의 금액은 2008년 기준 금액임.

4. 발리 각료회의의 평가 및 정책 시사점

가. 평가

■ 다자무역체제 평가

- 이번 제9차 발리 WTO 각료회의는 지난 12년간 합의도출에 실패해오던 DDA 협상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아 다자통상체제의 신뢰를 회복함과 더불어 향후 구체적 협상제개의 모멘텀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결과가 향후 전체 DDA 협상의 타결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나, 국제통상규범의 중심이 여전히 다자통상체제여야 한다는 각국의 인식을 상호 재확인하는 계기가 됨.

- 특히 무역원활화는 2004년 기본골격 합의안이 있었으나, 협정문으로서의 합의를 도출한 경우는 발리 패키지가 최초임.

■ 합의안 자체평가

- 발리 각료회의 합의안은 주요 국가의 이익이 적절히 반영된, 대체로 균형있는 결과로 볼 수 있음.
 - 농업의 식량안보용 공공비축 허용화 부문에서는 미국이 인도에 양보했지만, 수출경쟁(WT/MIN(13)/40)에서 미국·EU가 선언적 문구로 입장을 관철
 - 형식적으로 평화조항 적용기간 4년은 그대로 놓아두되, 실질적으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때까지 평화조항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미국이 인도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출경쟁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문구로 미국의 입장을 반영함.¹¹⁾
 - 농업 TRQ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개도국 우대입장을 수용한 반면, 제12차 각료회의에서 미합의 시 적용유보 선진국도 쿼터제도 변경이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 된다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선진국도 특별우대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음. 이는 사실상 이견이 대립되었던 개도국 우대에서 미국과 중국이 이익의 균형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음.
 - 개발 의제에서도 선언적 문구로 미국의 입장이 관철됨에 따라 개도국의 실질적인 이익은 크지 않을 듯하나,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통해 최빈개도국을 비롯한 개도국 우대규정의 이행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개도국에 전반적인 이익
 - 무역원활화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이익의 균형을 볼 수 있다고 평가
 - Section II에서 개도국의 요구사항을 선진국이 대부분 수용함에 따라 협상 막판까지 난항을 겪었던 Section I의 주요 조항에서 개도국이 양보를 이끌어내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타협점이 도출됨.
 - 미국은 특송화물의 신속한 반출, EU는 인가된 무역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부여 등의 조항에서 의무화를 관철하였으며, 선적 전 검사, 세관증개인의 사용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타협안이 도출되고, 영사공증제도는 개도국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조항 자체가 삭제됨.
 - 무역원활화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분야로, 협상타결로 인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1조 달러 이상의 실질 GDP 증가가 예상됨.
 - 무역원활화 협정문(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문서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2015년 7월 31일까지 각 회원국들의 인준 등 수락절차가 진행되고, WTO 회원국의 2/3 이상이 수락할 경우 무역원활화 협정을 수락한 나라들부터 발효될 예정임.
 - 그러나 Section II에서 협정의 이행시기와 정도를 개도국 및 최빈국의 이행능력과 연계하여 개도국의 이행능력이 부족할 경우 이행의무가 배제됨을 명시하고 있어 협정문이 발효된다 하더라도 합의된 모든 조치가 완벽하게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함.

11) 상대적으로 농산물 수출경쟁에서는 선언적 의미로 농산물 수출개도국이 손해를 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5. 발리 패키지 농업 및 개발분야 거시경제 효과

		선진국		개도국		최빈 개도국
		수출국 (미국/EU)	수입국 (G10)	수출국 (브라질, 중국)	수입국 (인도 포함)	
무역원활화		○	○	○	○	○
농업	농업 TRQ	○	×	○ (특히 중국)	△	△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	△	△ (×)	○ (인도에 한함)	△
	수출경쟁	○	△	×	△	△
	일반 서비스	△	△	△ (○)	○	○
개발 및 최빈개도국	무관세 - 무쿼터	○	△	×	△	△
	모니터링 메커니즘	△	△	○	○	○
	서비스 웨이버	×	△	△	△	○
	특혜원산지	△	△	△	△	○
면화		○	△	×	△	×

주: ○; 상대적인 이익, △; 중립, ×; 상대적인 손해.

■ 우리나라 관점에서 평가

- 농업 및 개발 분야에서는 부정적 영향 가능성이 적은 한편, 무역원활화를 통한 전반적 수출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할 수 있음.
- 농업분야의 경우 TRQ 관리개선과 관련하여 개도국 입장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 또한 식량안보를 위한 감축보조 허용화는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이상 이 제도를 원용할 수 있어 부정적 영향 가능성은 낮음. 다만 TRQ 관리 강화의 투명성 제고에 따라 농축산물 수입관리규정의 개선이 필요
- 식량안보와 관련해서는 인도의 주장이 대폭 수용되었으나, 각료결정일(2013. 12. 7) 기준 공공비축 프로그램에 한정하여 현재 프로그램이 없는 개도국은 사용이 불가함. 또한 농업협정상의 보조한도 초과에 대해서만 분쟁을 자제하는 등 발동요건이 엄격함.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5년부터 쌀 정부수매제를 폐지하고 허용보조인 쌀 공공비축제를 도입하여 이 제도의 활용여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
-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1차 상품 및 의류, 직물의 경우, 대개도국 수입 대비 0.3% 및 1.1%에 지나지 않아 무관세무쿼터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무역원활화 협정으로 비관세장벽의 일종인 통관절차 개선을 통해 상품 이동의 용이성 확대, 거래비용 절감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입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우리나라는 위험관리, 싱글위도우, 평균반출시간 측정 및 공표 등을 제안하여 최종협정문에 부분적으로 반영시키는 등 무역원활화의 규범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음.
- 이번 무역원활화협상의 타결로 우리나라는 약 1.5~3.9%의 실질 GDP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수출입 및 통과 절차, 수수료 및 요금, 실행세율, 관련 법률 등의 인터넷 공표, 품목분류 및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 등을 통해 투명성이 개선되고, 물품의 도착 전에 수출입 관련정보 제출이 가능해짐. 통관 후 물품의 검사, 특송화물의 신속한 반출, 인증받은 수출입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 등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로 인한 기업 편의증대 및 거래비용 감소효과가 예상됨.

- 더불어 일부 개도국의 비관세장벽으로 지적되었던 선적 전 검사의 경우, 품목 분류와 관세 평가에 대해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수출입 통관시간의 단축이 예상되기도 함.

나. 정책 시사점

■ 향후 본격적인 DDA 종료를 위한 논의들이 활발해질 것인바, 종료방식별 시나리오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 협상전략을 조속히 마련하여 post 발리 작업계획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함.

- DDA 협상은 2014년에 발리 성과를 바탕으로 DDA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향후계획인 ‘post 발리 작업계획 (post-Bali work programme)’ 을 구체화시킬 예정이다.
- DDA 협상의 최종타결을 위한 방식은 기본적으로 ① 잔여이슈 전체에 대한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 방식과 ② 연속적인 소규모 패키지(a series of small packages) 방식으로 대별 가능한데, 발리의 결과가 조기 수확(early harvest) 방식의 가능성을 확인시킴으로써 ②번 방식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됨.
- ②번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경우, DDA 잔여 이슈들이 이전 발리 패키지에 비해 국가별로 이해득실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조기패키지 우선포함분야(priority issues in an earlier package) 선정 및 패키지 균형화(package balancing)를 두고 이해 당사국간 치열한 논쟁과 격렬한 입장대립이 예상되기도 함.
-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협상전략을 조기에 마련하여 post 발리 작업계획에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시켜야 할 것임.

■ 이번 발리 성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TPP 등 ‘광역 RTA(지역무역협정 RTA)’ 이 국제무역규범 형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다자통상전략 차원에서 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및 WTO의 역할 제고에 관한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을 중심으로 DDA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위 21세기 무역이슈(지재권, 경쟁정책, 투자 등) 해결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선진국은 신흥개도국을 포함하는 광역 RTA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이러한 광역 RTA에 포함되지 못한 개도국들은 DDA에 잔류하게 됨으로써 자칫 ‘리그 양분화’가 전망됨.
-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다자무역체제의 수혜자로서 광역 RTA 확산이 다자체제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무역협정의 투명성 및 WTO 규범과의 합치성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태야 할 것임.
 - 리그 양분화로 인해 광역 RTA 참여국과 DDA에 잔류하게 될 국가 사이의 갈등이 커진다면 그렇지 않아도 다자무역자유화협상의 주도체로서 그 영향력이 약해진 WTO가 자칫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사법적 규율체로서의 역할 약화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함.
 - 이 경우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무역분쟁 발생 시 양자적 분쟁해결보다는 다자적 분쟁해결이 유리하다는 점에서 리그 양분화는 바람직하지 않음.
-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에서 지역무역협정 통보 규정의 개선이나 투명성 메커니즘 이행 제고방안 논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한편, APEC에서 RTA 모범관행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임. **KIEP**